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3년 3월 4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박재영 신재생에너지과장, 김의중 사무관(2110-3953) 김민수 전문관 (2110-5425)		

의무이행비용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RPS 운영체계 개편
- 3월부터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통해 공급인증서(REC) 거래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RPS 고시(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) 등 개정('13.3.1 시행)을 통해

○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('13.1.14)하고, 금년 3월부터 REC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산정·정산업무를 전력거래소가 수행토록 RPS 운영체계 개편

* RPS(Renewable Portfolio Standard): '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'란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

* REC(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) :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에서 공급된 1MWh 기준의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1REC 단위로 발행

□ 이는 RPS 시행 첫해인 '12년은 REC 거래를 전력거래 시장과 별개로 에너지관리공단(신재생에너지센터)이 운영*해왔으나

* '12년은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급인증서 시장을 운영하고, 의무이행비용을 한전에 청구

○ 전기요금을 통한 RPS 의무이행비용*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서는 전력거래·요금회수 체계와 RPS 제도간 정합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임

* 의무이행비용: 신재생의무공급량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, 기준가격(REC 거래량 및 해당가격을 가중평균)에 의해 산정한 금액

- REC 거래는 전력거래의 일종이며, 전력거래가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,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한전에 청구가능

□ 금번 RPS 운영체계 개편으로

○ 기존에 에너지관리공단(신재생에너지센터)이 수행한 RPS 관련 업무 중, REC 거래시장 개설·운영, 공급의무자 의무이행비용 산정·정산 업무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하고

○ REC 발급·관리·폐기, 공급의무량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점검,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업무는 에너지관리공단(신재생에너지센터)이 계속하여 수행할 예정

○ 또한, 업무 이원화에 따른 공급인증기관(신재생에너지센터, 전력거래소)간 업무협조 강화를 위해 두 기관간의 RPS 공동운영규칙을 개정('13.3.1)하여 RPS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

< RPS 관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전력거래소 역할분담 >

신재생에너지센터	전력거래소
■ REC 발급·관리·폐기 (발전설비 확인, 국가소유 REC관리 대행)	■ REC 거래시장 개설·운영 (계약시장, 현물시장)
■ 공급의무량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점검 (과징금 산정)	■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산정·정산 (REC 가격 확정)
■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운영	

□ 금번 RPS 운영체계 개편은 전력시장을 통해 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RPS 공급인증기관 업무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

○ RPS 기준가격 산정이나 REC 가중치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공급의무자들의 RPS 의무이행에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봄

□ 한편, RPS 공급의무자들의 '12년 의무이행 실적은 현재 집계 중*에 있으며,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나 대상 등은 '12년 이행실적 집계와 검증이 완료되는 3월 이후에 확정될 전망

* 공급의무자는 '12년 의무이행 실적을 금년 2월 말까지 공급인증기관(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)에 제출

참 고 RPS 운영체계 개편 주요 내용

□ RPS 업무기관을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력거래소로 이원화

* REC 거래는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거래토록 규정되어 있어 전력거래소를 '13.1.14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 (신재생센터는 '10.12.30 기 지정)

○ 발전설비 확인과 REC 발급·관리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, REC 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산정·정산은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도록 기능 분할

○ 국가소유 REC 운영과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기존 체계 유지

* 국가소유 REC 운용계획은 정부가 수립(물량, 가격 결정)하되, REC발급·관리·배분 등은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대행

○ 2개 공급인증기관간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현행 신재생센터 RPS 운영규칙을 전력거래소와의 공동규칙으로 개정

< RPS 관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전력거래소 역할분담>

신재생에너지센터	전력거래소
■ REC 발급·관리·폐기 (발전설비 확인, 국가소유 REC관리 대행)	■ REC 거래시장 개설·운영 (계약시장, 현물시장)
■ 공급의무량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점검 (과징금 산정)	■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산정·정산 (REC 가격 확정)
■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운영	

□ 의무이행비용 산정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규정 (내용은 종전과 동일)

○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산정원칙은 RPS 고시에서 규정하고, 세부 산정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규정

○ 전력거래소는 RPS 고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여 지급

참 고 RPS 제도 개요 (Renewable Portfolio Standard)

□ (개념)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(RPS)란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

○ 영국, 스웨덴, 캐나다, 호주 등이 RPS를 도입·운영중이며, 미국(현재 29개주 시행중)은 연방차원의 RPS법안 도입 추진중

□ (공급의무자 범위) 설비규모(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)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, 지역난방공사 (국가 총발전량의 98.7% 차지)

* 6개 발전자회사, 지역난방공사, 수자원공사, 포스코파워, SK-E&S, GS EPS, GS파워,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

□ (연도별 총 의무공급량) 공급의무자의 기준발전량(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) × 의무비율

연도	'12	'13	'14	'15	'16	'17	'18	'19	'20	'21	'22
의무비율(%)	2.0	2.5	3.0	3.5	4.0	5.0	6.0	7.0	8.0	9.0	10.0

*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량은, 개별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여 고시

□ (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)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% 이내에서 불이행사유,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

□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(REC)의 가중치

* REC : Renewable Energy Certificate

* 공급인증서 가중치 : 물리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량 1단위당 공급인증서 발급량(예: 가중치 1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발전량 1MWh에 대해 1REC 발급, 가중치 0.5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MWh에 대해 0.5REC 발급)

□ (유연성 메카니즘 확보) 의무이행을 위해 외부구매, banking, borrowing 등 유연성 확보방안 구축